

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을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, 사용처,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불카드의 발행권면 금액의 최고한도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의2(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	제7조의2(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<u>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을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, 사용자,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불카드의 발행권면 금액의 최고한도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
② (생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